디팰리스 컬렉션(D·PALACE COLLECTION) 오피스텔 입주자 분양공고

D·PALACE

■ 본 오피스텔의 입주자 분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18.01.25. 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전매제한 및 거주자 우선 공급이 적용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청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0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추첨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자에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05조의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03조의 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간을 말한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대해,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1 부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 우선공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05조의 동법 시행령 제05조의에 의거하여, 분양 호실의 20%를 분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에 한해 우선 공급합니다.
- 전매호실 공급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전매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5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05조 및 시행령 제07조 규정에 의거 제2019-도시개발과-분양신고-1호로 분양신고 처리 알림.

■ 본 건축물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건축물임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2019 -71]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06-5번지 외 62필지

■ 대지면적 : 5,413.400㎡

■ 연면적 : 57,824.900㎡

■ 공급규모 : 지하7층~지상18층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7층~지하3층 주차장, 지하2층 운동시설, 지하1층~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지상8층 오피스텔, 지상9층~지상18층 공동주택

■ 주차대수 : 총337대

■ 공급대상 및 공급면적 (단위 : 실, ㎡)

층하층	층호실수	타입	해당호실수	실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합계	
1층	18	S1	5	41.634	21.470	12.427	26.354	101.885	9.54
		S-1	3	43.142	22.290	12.876	27.308	105.616	9.89
		S-2	3	41.662	21.462	12.435	26.372	101.931	9.54
		S2	2	42.758	22.544	12.762	27.065	105.129	9.84
		S3	5	40.149	20.967	11.983	25.414	98.513	9.22
		A1	6	51.131	27.674	15.261	32.365	126.431	11.84
		A2	6	51.719	27.338	15.437	32.738	127.232	11.91
		A3	6	52.113	27.124	15.554	32.987	127.778	11.96
		A4	6	51.336	27.556	15.322	32.495	126.709	11.86
		A5	17	53.748	28.062	16.042	34.022	131.874	12.35
		A5-1	3	54.547	28.176	16.280	34.528	133.531	12.50
		A5-2	1	54.547	28.176	16.284	34.529	133.536	12.50
2층	45	B1	16	80.262	39.487	23.956	50.805	194.510	18.21
		B2	4	79.479	39.947	23.722	50.310	193.458	18.11
		B2-1	2	79.141	44.011	23.622	50.096	196.876	18.43
		B2-2	2	79.471	40.542	23.720	50.305	194.038	18.17
		B3	10	81.277	40.797	24.259	51.448	197.781	18.52
		B4	18	82.090	40.322	24.502	51.963	198.877	18.62
		B5	4	79.723	39.807	23.795	50.464	193.789	18.14
		B5-1	4	79.760	40.468	23.806	50.488	194.522	18.21
		B6	10	81.516	40.659	24.330	51.599	198.104	18.55
4층	13	B7	13	70.697	38.149	21.101	44.751	174.698	16.36
5층	12	C1	8	126.131	63.312	37.647	79.840	306.930	28.74
		C1-1	4	128.808	63.775	38.446	81.535	312.564	29.26

■ 청약근 안내 (단위 : 실)

군	유형	공급 실수	비고
Studio		18	1인당 군별 1개씩 청약 가능
2군	1 Bed	45	
3군	2 Bed(B1~B6)	70	
4군	2 Bed(B7)	13	
5군	3 Bed	12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표

구분	호별	타입	공급금액				납부일정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 계	계약금(10%)	1차 중도금(10%)	2차 중도금(10%)	잔금(70%)	
							계약시	계약체결후 1개월	계약체결후 5개월	입주지정일	
145	813	C1-1	1,162,005,000	1,035,450,000	103,545,000	2,301,000,000	230,100,000	230,100,000	230,100,000	1,610,700,000	
146	814	A5-1	477,225,000	425,250,000	42,525,000	945,0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661,500,000	
147	815	A5-1	477,225,000	425,250,000	42,525,000	945,0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661,500,000	
148	816	C1-1	1,045,855,000	931,950,000	93,195,000	2,071,000,000	207,100,000	207,100,000	207,100,000	1,449,700,000	
149	817	A4	461,065,000	410,850,000	41,085,000	913,000,000	91,300,000	91,300,000	91,300,000	639,100,000	
150	818	A2	465,105,000	414,450,000	41,445,000	921,000,000	92,100,000	92,100,000	92,100,000	644,700,000	
151	819	B3	649,935,000	579,150,000	57,915,000	1,287,000,000	128,700,000	128,700,000	128,700,000	900,900,000	
152	821	B4	653,470,000	582,300,000	58,230,000	1,294,000,000	129,400,000	129,400,000	129,400,000	905,800,000	
153	822	B4	653,470,000	582,300,000	58,230,000	1,294,000,000	129,400,000	129,400,000	129,400,000	905,800,000	
154	824	B3	649,935,000	579,150,000	57,915,000	1,287,000,000	128,700,000	128,700,000	128,700,000	900,900,000	
155	825	A2	433,290,000	386,100,000	38,610,000	858,0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600,600,000	
156	826	A4	429,755,000	382,950,000	38,295,000	851,000,000	85,100,000	85,100,000	85,100,000	595,700,000	
157	827	C1-1	1,025,655,000	913,950,000	91,395,000	2,031,000,000	203,100,000	203,100,000	203,100,000	1,421,700,000	
158	828	A5-1	556,510,000	495,900,000	49,590,000	1,102,000,000	110,200,000	110,200,000	110,200,000	771,400,000	

- 오피스텔 타입별, 층, 향, 구조 등에 따라 분양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실별 정확한 분양금액은 오피스텔 공급안내 및 분양홍보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금액은 타입, 면적,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타입별 공희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그밖 세법상 등록세 포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7.01.20. 시행) 제03조 규정에 의거 매수인은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0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기 상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및 공용면적공리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MDF, 방재실, 재활용폐기물 보관소, 부대시설, 복도, 계단, 로비, 벽체두께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방재실은 해당 층의 용도별(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개산 배분되었습니다.
- 상기 상별 계약면적은 대지공급 당시 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별(오피스텔) 전용면적 비율로 균등 배분한 것을 각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로 균등하게 개산 배분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공급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금액에 의해 세부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며, 이 경우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0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 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대상 오피스텔은 15층실이고, Studio, 1Bed, 2Bed, 3Bed 총 4개 타입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약 신청은 군으로 구분하여 접수받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실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마감시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분양홍보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양 외에 추가적인 마감시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시양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마감재 등을 통하여 시공확정, 기본형 간이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실 피해 등)
- 전화상담 및 분양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오피스텔 공급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청약이나 개인선호도 반영을 희망 경우 잔금 완납후 계약자 스스로 외장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실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분양홍보관으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출입구, 창틀외장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 덕)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배체를 통한 홍보물(안테트,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갈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 · 전기실 등의 급 · 배기가 및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인접한 실은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구조,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 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바닥 차로 등에 인접한 실에는 차량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에 의한 인접한 실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면 폭 및 주차면 수는 도로 기준으로 표현되며, 주차구획선 표기에 따른 좌우 편차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전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시어(사업승인 설계도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은 가능하나, 지장물(입주자자치전점검 등의 지장물) 외에는 인전시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 · 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중앙난방(전용 85㎡초과 타입 평형은 제외, 동 타입은 천정형 EHP(냉방), 구조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 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바닥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 1,2층과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로 해당 시설의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실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 · 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붙박이장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상부장 및 수납렌지장 등은 제품의 특성상 불량률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구입 및 가구 공장 제작 시 치수 및 색상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나 이로 인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 · 진동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공시 실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옥실의 단차는 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옥실의 마감마감 단차는 분양홍보관에 비치된 도서를 기준하여 시공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주위로 도로에 의한 차량통행으로 인해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관리사무소는 지상층에 위치합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면 표기는 도서 기준으로 표현되며, 주차구획선 표기에 따른 좌우 편차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전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시어(사업승인 설계도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은 가능하나, 지장물(입주자자치전점검 등의 지장물) 외에는 인전시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 · 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중앙난방(전용 85㎡초과 타입 평형은 제외, 동 타입은 천정형 EHP(냉방), 구조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 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바닥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 1,2층과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로 해당 시설의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실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 · 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붙박이장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상부장 및 수납렌지장 등은 제품의 특성상 불량률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구입 및 가구 공장 제작 시 치수 및 색상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나 이로 인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 · 진동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 시공 또는 특시도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변 개발 조성계획상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되고 있 및 실행 중인 사항을 현장 여건 및 주변 개발 행위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지연되거나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 · 진동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보조석(되어 슈하차시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용도별 주차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대지 주위로 도로에 의한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관리사무소는 지상층에 위치합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면 표기는 도서 기준으로 표현되며, 주차구획선 표기에 따른 좌우 편차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전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시어(사업승인 설계도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은 가능하나, 지장물(입주자자치전점검 등의 지장물) 외에는 인전시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 · 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중앙난방(전용 85㎡초과 타입 평형은 제외, 동 타입은 천정형 EHP(냉방), 구조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 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바닥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 1,2층과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로 해당 시설의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실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 · 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붙박이장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상부장 및 수납렌지장 등은 제품의 특성상 불량률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구입 및 가구 공장 제작 시 치수 및 색상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나 이로 인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 · 진동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대지 주위로 도로에 의한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관리사무소는 지상층에 위치합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면 표기는 도서 기준으로 표현되며, 주차구획선 표기에 따른 좌우 편차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전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시어(사업승인 설계도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은 가능하나, 지장물(입주자자치전점검 등의 지장물) 외에는 인전시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 · 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중앙난방(전용 85㎡초과 타입 평형은 제외, 동 타입은 천정형 EHP(냉방), 구조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 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바닥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 1,2층과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로 해당 시설의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실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과 천창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 · 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붙박이장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상부장 및 수납렌지장 등은 제품의 특성상 불량률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구입 및 가구 공장 제작 시 치수 및 색상 등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나 이로 인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 · 진동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대지 주위로 도로에 의한 차량통행으로